

# 대학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 한국항공대학교

##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7.3.1		16		
2	2018.3.1		17		
3	2019.1.7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 대학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및 한국항공대학교 「학칙」에 따라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

② <삭제 2017.3.1>

**제2조** (등록금의 구분)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업연한 내의 등록금과 수업연한 초과 등록금으로 나눈다.

1. 수업연한 내의 등록금

구 분	내 용
등록금 예고제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동일하게 부여되는 등록금 적용
등록금 비예고제	등록금 예고제 미적용

2. 수업연한 초과 등록금 <개정 2017.3.1>

구 분	내 용
학기초과자 등록금	학부 및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자의 등록금
연구등록금	석사이상의 학위과정에서 수료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연구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과되는 등록금
졸업요건 미비자 등록금	학부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학점 미취득 이외의 졸업요건 미비 등으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자의 등록금

**제3조** (등록금의 책정) ① 수업연한 내의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한다. <개정 2017.3.1>

② 수업연한 초과 등록금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3.1>

**제4조** (등록금의 면제·감액)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3.1>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③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其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7.3.1>

④ 등록금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 2017.3.1>

**제5조 (징수방법)** ①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3.1>

② 수업연한 내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기별로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별표2>에 따라 분할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3.1>

③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납부를 원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1>

④ 학기초과자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신청학점 기준(재수강 학점 포함)에 따라 징수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개정 2017.3.1>

신청학점	등록금 산정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부터 11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12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8조 및 「항공·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7.3.1>

⑤ 연구등록자의 등록금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4조 및 「항공·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17.3.1>

⑥ 졸업요건 미비자의 등록금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3.1>

⑦ 등록금 인상 및 인하에 따른 차액은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 단, 별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1>

⑧ 등록금을 납부하고 전과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계열 간 등록금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한다. <신설 2017.3.1>

**제6조 (징수기일)** 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기일은 해당 학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1>

② 학생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기간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3.1>

**제7조** (징수고지) 교내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를 통해 고지한다.

**제8조** (등록금의 대체) ①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학을 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한다. <개정 2017.3.1>

1. 수업일수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육아휴학, 창업휴학 포함)한 경우

<개정 2018.3.1>

2. 입영휴학 및 질병휴학(4주 이상 입원가료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휴학)한 경우

<개정 2018.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원하는 자의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3.1>

③ 제2항에 따라 환불받은 자가 당해 학기 다시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④ <삭제 2017.3.1>

⑤ <삭제 2017.3.1>

**제9조** (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5. 학위청구논문 발표를 포기한 경우

6.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4주선을 지나 일반 휴학(육아휴학, 창업휴학 포함)할 경우 <개정 2018.3.1>

③ 반환금액은 회계별·목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백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제9조의 2** (반환절차) ①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재무팀에 등록금 반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②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재무팀에 반환 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③ <삭제 2017.3.1>

[기존 제9조에서 제9조의 2로 조 변경]

**제10조** (교육비납입증명서) ① 교육비납입증명서라 함은 교육비(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납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7.3.1>

②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 제59조4의 3항에 따라 장학금 등을 제외한 공제대상 교육비 부담액에 한해 발급한다. <개정 2017.3.1., 개정 2019.1.7>

③ 제9조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7.3.1., 개정 2019.1.7>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경과조치) 이 규정 제5조제7항은 2017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3.1., 2018.3.1>

### 등록금 예고제

1. 등록금 예고제라 함은 학부과정 2007학년도 입학한 신입생부터 입학 시 예고된 등록금으로 졸업 시까지 동일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학 중 휴학을 한 학기 이상 할 경우에는 (입학년도 + 휴학 학기 - 2학기)에 해당하는 연도의 등록금을 적용한다. 단, 휴학 학기가 홀수인 경우 "1"을 더하여 적용한다.
3. 군 휴학 및 질병 휴학의 경우 다음에 따라 징수한다.
  - 가. 군 휴학의 경우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 수는 휴학 학기에서 제외한다.
  - 나. 질병 휴학(4주 이상 입원가료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휴학)은 휴학 학기에서 제외한다. (최대 4학기 까지)
4. 재(편)입학생은 재(편)입학하는 학년도의 동일한 학년의 등록금 예고제를 적용한다.
5.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등록금 예고제를 폐지한다. (등록금 예고제 적용은 2013학년도를 상한선으로 한다.)

<별표 2>

### 등록금 분할징수[전부개정 2019.1.7]

1. 등록금 분할징수라 함은 해당 학기 등록금을 학기에 걸쳐서 일정 횟수 분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분할징수 횟수, 금액, 신청기간, 납부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3. 등록금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정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입학 첫학기 등록 대상자(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
  - 나. 수업연한 초과자(연구등록 포함)
  - 다. 정부 학자금 대출 지원자
4.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는 지정된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차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되며 미납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7.3.1>

### 등록금의 반환기준 (제8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학기 개시일에서 60일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 수업료 :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학기별 수업료 총액

3. 반환사유 발생일 결정 시 다음에 해당하는 일자를 반환사유 발생일로 정한다.
  - 가. 등록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하는 경우 : 자퇴일
  -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거나, 복학하지 않아 제적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
  - 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자퇴하게 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재학한 기간이 긴 날짜
  - 라. 위 '다'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 복학 후 휴학까지의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재학한 기간이 긴 날짜
4.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 및 자퇴할 경우 장학금지급 규정 및 해당부서의 지침을 반영하여 반환 처리한다.
5. F학점을 받은 경우 또는 결석 등으로 인하여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은 반환 및 대체되지 않는다.
6. 등록금 분할납부자도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반환 처리하며, 분할 납부한 금액이 반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